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3 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김한규·조 국·모경종

강경숙 · 정일영 · 안호영

서미화 · 서영석 · 정준호

위성곤 • 고민정 • 전현희

이성윤 · 김정호 · 위성락

백승아 · 문대림(17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, 이 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한 상황임.

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4).

법률 제 호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제2항 중 "한다"를 "하며,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4(상급종합병원 지정) ①	제3조의4(상급종합병원 지정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	2
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	
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	
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<u>한</u>	
<u>다</u> .	하며, 상급종합병원이 지
	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
	<u>록 하여야 한다</u> 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